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18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강경숙 · 황운하 · 차규근
허성무 · 신장식 · 백승아
서왕진 · 정춘생 · 백선희
김선민 · 이해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항 중 “1.2배를”을 “1.2배(이하 “법정 한도”라 한다)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략)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u>1.2배를</u>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u><후단 신설></u>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u>1.2배(이하 “법정 한도”라 한다)를</u> ----- ----- <u>. 이 경우 등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⑪ · ⑫ (생략)	⑪ · ⑫ (현행과 같음)